

- ④ 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지방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③목④ 및 ⑤에서 같다]
- ⑤ 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 ③ ①목에 따른 기관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① 그 소속기관
- ② 그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시·도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 ③ ④에 따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 ④ ⑤에 따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 ④ ①목에 따른 기관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또는 교육부의 다른 소속기관
-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 (가) (3)의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 (나)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3)항 (가)의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되, 그중 1명 이상은 학부모위원일 것
- (5)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 (6)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카) 징계의결의 요구(「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 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장을 거쳐야 한다.
- (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 (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나이스 인사기록 출력물]
- (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 (라)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등 관계 증거자료
- (마)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바)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 (사)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